

• •
특집 —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2010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구 본 근

I. 머리말

지방자치단체는 거센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고, 지방재정의 패러다임도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성과와 경쟁 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FTA의 추진으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치단체 또한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지방재정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집행과정의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한 2010년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운용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1. 지방회계 분야

가. 지방계약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오다가 2006년 1월에 「지방계약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계약제도는 현재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와 16개 지방교육청은 물론 공립학교, 지방공기업 등 약 12천여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도 25만여 건, 24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지방계약법령에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금지, 재해복구사업의 개선계약제도 도입, 공사의 단가계약제도 도입, 지방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등의 확대 추진,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소액수의계약의 일정금액이상 전자견적 제출 의무화, 계약사무의 위탁 등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정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반면,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사업을 중복적으로 발주하거나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분할발주하고 있으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방식보다는 일괄입찰방식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 계약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원·하도급, 특히반영 문제 등 아직도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비리 요인이 남아 있으며, 자치단체 계약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여 간의 제도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방계약제도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재무회계제도 운영

기업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이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舊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초 부천시, 강남구 등에서 복식부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통합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¹⁾에 의한 결산보고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결산 검사위원회 제출 및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재무보고서를 세 번째로 작성하게 되는 해인 관계로 재무보고서의 활용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올 한해는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통합결산체계구축과 원가회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지방공기업 분야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지하철, 임대주택, 공공시설 운영 등 주민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218개 이던 지방공기업은 2009년 9월말 현재 369개로 무려 155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와 종사인력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 결산결과 예산규모는 40조 6,802억 원이며 종사인력은 62,508명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 운영현황(‘08년도 결산결과)》

구 분	계	직영기업	공사 · 공단
공기업수(개)	369	238	131
종사자수(명)	62,508	15,900	46,608
예산규모(억)	406,802	172,138	234,664

※ 지방공기업 수는 2009년 9월말 현재 기준

1)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 파악 불가, 자산의 비용화 개념(감가상각비)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지자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완적인 제도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지방공기업이 급격한 양적성장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되고,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객만족도점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어 고객지향의 지방공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경영평가결과(평균) : ('06)79.9점→('07)80.9점→('08)83.4점→('09)84.5
- ◇ 고객만족도조사결과(평균) : ('06)60.5점→('07)66.8점→('08)69.4점→('09)75.1점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기업의 남설, 중복투자, 민간영역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낙하산 인사, 성과급 과다지급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객만족·성과중심의 생활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09.6)하여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III. 2010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1. 기본방향

가. 지방회계분야

2010년 지방회계 기본운용방향은 우선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나타난 지방계약제도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 특성 반영 및 시공품질 확보, 계약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등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결산체계 구축, 원가회계기준 마련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 결산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성과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방재무회계정보 활용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나. 지방공기업 분야

2010년도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은 기존의 자율·책임과 성과지향의 공기업 운용 방향을 계승하면서, 그간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제도적인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과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구현을 이루고, 나아가 고객만족과 성과 창출의 일류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점 추진사항

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1)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의 지역제한제도는 지역의 영세한 업체를 보호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지나치게 지리적·행정적 기준에 의해 제한하다보니 시·도를 달리하는 자치단체 간 통합공사 등에는 적용할 수 없고,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난립하는 등 오히려 시공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인접 또는 연접하는 2~3개 시·도를 묶어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2~3개 시·군이 통합 발주할 경우에도 2~3개 시·군 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의계약제도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의계약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내륙지방과 도서지방 등 다양한 계약환경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기준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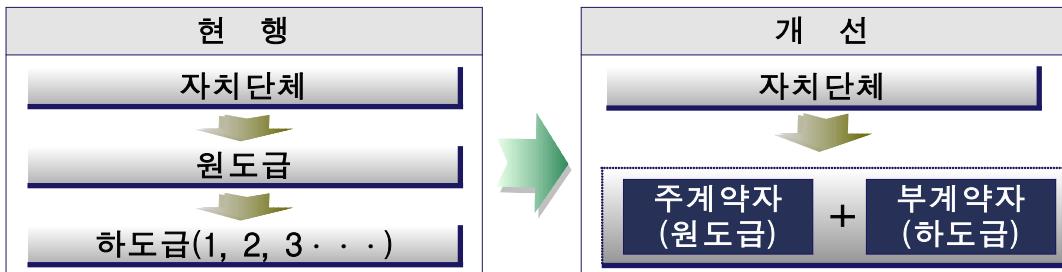
〈지역규모별 수의계약 한도 조정(안)〉

구 분	현 재	개 선
시·도	2천만원이하	• 공사 5천만원 • 용역·물품 3천만원
50만 이상 시	2천만원이하	3천만원 이하
시군구	2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아울러, 현재의 관급계약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형태보다 대부분 다단계 하도급을 통하여 시공 및 생산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기술발전과 품질저하 및 비리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원-하도급방식을 개선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할 행정

있는 「주계약자관리제도」를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존의 「원·하도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 원·하도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 〉



그밖에도 자치단체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약 95% 이상이 적격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계약의 특성에 따라 적격심사, 최적가치, 공모심사, 최저가 등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공사 계약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며, 종합공사의 계약분쟁 조정 대상을 현재의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조정분야도 설계변경 분야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계약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리는 주로 계약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계약비리 예방을 위하여 발주계획과 수의계약내역을 자치단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금 지급현황, 감독·감리자 현황 등 계약의 전 과정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상황까지 계약 전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은 물론 대금지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일괄(턴키)·대안입찰제도는 공기단축이 필요하거나 빈번한 신기술·신공법 등 경제적 대안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단순한 공사도 일괄·대안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난이도가 요구되거나 비리가 많은 자치단체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당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설계에 신기술이나 특허를 반영하는 경우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3)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 강구

자치단체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고, 특히 인접한 자치단체와는 지방도로 건설 등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자치단체별로 따로 발주하다보니 예산 절감과 시설 활용률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합하여 입찰 및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통합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계약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잣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설계변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와 사전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고, 자치단체 계약 조직의 확충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지방재무회계제도의 활용성 제고

1) 통합결산보고체계 구축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이원적인 결산보고서를 통합하되, 예산회계 결산서와 재무회계 결산서간 중복되는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 관련 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의 부속명세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 행	개 편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 §51) ② 기금결산(기금관리기본법 §8) ③ 채권현재액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59) ④ 채무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59) ⑤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47) ⑥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62) ⑦ 재무보고서(지방재정법 §53)	① 결산보고서 •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보고서(기금포함) • 재무보고서 - 재무제표 -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제도도 아울러

개편할 계획이다. 결산보고서 구성과 결산검사가 공히 통합체계로 일원화될 경우 자체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에서도 결산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가능하고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향후 예산과 정책에 대해 반영함으로써 결산승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2) 원가회계기준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원가회계기준은 사업별 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의 계산 및 배부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비용 대응구조를 감안하면 총원가 방식의 계산방법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에 대한 피드백 등 원가의 활용측면에서는 총원가에서 관련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회계 내에서도 행정형과 사업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사업형의 경우 관련 수익 차감 등 원가계산방식이 행정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사업별로 원가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원가분석을 통하여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총원가, 관련수익, 순원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하여 사업형 회계의 경우 원가의 회수정도를 행정형 회계의 경우 행정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파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원가회계기준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원가회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지속적 추진

1) 부실공기업의 청산 등 구조조정 추진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09년까지 총 48개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정남진장홍유통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명령을 내리는 등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경영진단의 경우 1년 단위 경영평가와 연계한 연 1회 경영진단으로 잠재적 방만/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개별 공기업 단위의 경영진단으로 지방공기업간 통폐합 등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경영진단 대상도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소규모 공사·공단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



다.²⁾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의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일환인 정기적인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현재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간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경영부실 뿐만 아니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산(또는 민영화), 통·폐합, 사업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된 지방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26개 기관 및 3센터 법인 9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별 공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지방공기업 운영체계 개선

앞서 언급한 지방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설립타당성 검증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공기업이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연확대수단으로 이용된 면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공기업 납설 방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 시군구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시 시도 협의 의무화 등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09.4.21)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설립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내 동일사안으로 재용역을 금지토록 하였다

올해에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설립시 주민공청회 개최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증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할 계획이다.

둘째,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되어 이로 인한 인사전횡 논란 및 자율·책임 경영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고 임원 임명시 전문성 검증 절차가 없어 공무원 출신 위

2) '00년 이후 경영진단 대상 48개 기관 중 상하수도가 50%(24개 기관)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공사·공단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위주(24개 중 18개)

주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 도입하여 이사·감사도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고, 상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권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개입을 제한하여 자율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사장에게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과계약제를 임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발령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여 기관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조직·예산 등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의 자연 및 분양 차질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지 않아 과다하게 책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내부조직을 설치하는 등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에도 직무성과와 연계가 미흡하고 과다 지급되는 등 낭비요인이 있었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내부운영경비 등을 과대 책정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2010년부터는 지방공기업의 조직예산 등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하고자 우선, 결원율 5%이내에서 정원을 관리토록하고, 정원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의무화하여 부분별한 조직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무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개인/기관성과급을 통합하여 성과급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리·방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미지급,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된다.

넷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로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07년 12월부터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을 구축하여 주민·언론 등의 외부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정보 통합공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지방공기업법 개정 '09.4)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영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대상기관을 지방직 영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시항목도 이전보다 확대(30개→35개 항목)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성실 공시한 기관에 대한 벌점부과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경영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는 현행 지방공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 관리적 통제수단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적실성 있는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경영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경영평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나아가 그 후 발효과인 경영개선 유도의 효과도 반감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시군구 공기업평가 시도 이양, 공기업별 특성에 따른 특성지표(주요 사업 활동 등) 차등화 등 평가체계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평가편람의 구체성 강화, 핵심계량지표 비중 강화, 시도평가단에 대한 평가편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함께 경영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III. 맷음말

이상에서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2010년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지방계약제도 선진화는 「지방계약법」 시행 이후 지난 4년간의 지방계약제도 안정화시기를 거쳐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계약제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재무회계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로의 성공적 전환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지방경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한결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지방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명실 공히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추진하는 지방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서로가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물론 업계, 유관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이 상호 협조하여 지방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발전, 나아가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